진로체험센터운영규정 5-1-31

규정번호 5-1-31
제정일자 2016.4.26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기획평가팀

[규정명칭 변경 2025.3.31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진로체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초·중·고등생의 꿈과 끼, 창의성, 인성,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대학 및 지역사회의 교육기반과 관련된 진로체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기부(진로체험 등)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
2. 교육기부(진로체험 등) 운영 및 관리
3. 교육기부(진로체험 등) 홍보(꿈길, 교육기부포털 등) 및 관리
4. 교육기부(진로체험 등) 실적(우수기관 인증, 진로체험기관 인증) 관리
5. 기타 진로체험 관련 업무 지원

[전문개정 2026.7.20.]

제3조 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조직) ① <삭제(2026.3.23.)>

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팀장 및 전담연구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6.3.23.)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교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과 기획실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되며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⑤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회의록은 센터에 보관한다.

제6조(재정) 재정은 우리대학 회계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명칭, 제2조, 제2조제7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1항·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)